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개편안 설명

1 제도 개요

○ **일자리 함께하기 제도**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

- **(신규채용 인건비)** 증가노동자 수 1명당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**40~100만원, 1~3년간 지원**

- **(임금감소분 보전)**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**월 10~40만원, 1~3년간 지원**

* 사업주 보전임금의 80% 한도,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

○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**주 근로시간 단축제** 신설

*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

❖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

1. 교대제 도입 확대: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2. 근로시간 단축제
   ①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  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: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
3. 일자리 순환제: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
○ "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" 개정일('18.7.1일)로 개편 제도 적용

※ 다만, 2018년 3월 1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소급 지원

2 주요 변경사항(건의사항 반영)

▲ (건의) 업종의 특성상 출퇴근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**수기에 의한 근로시간 관리 방식 인정**

⇒ (검토) **전자적 방식**으로 **근로시간 관리**가 **곤란**하여 **노사합의**에 의해 **간주 근로시간**을 **인정**하는 경우 등 **예외적인 경우**에는 **수기 방식 인정**

▲ (건의) 인력난으로 촉탁직(정년퇴직자 재고용)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**촉탁직 근로자**도 **지원대상**에 **포함**

⇒ (검토) 인력난이 심한 버스업종의 특성을 감안,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**1년 이상의 근로계약**을 **체결**한 경우 **지원대상에 포함**

▲ (건의) **58세 이상 근로자**가 신규 채용되는 경우도 지원

⇒ (검토) **버스업종에 한해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**

▲ (건의) 1~3월보다 4~6월에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여, 증가근로자 수 계산 시 **1~3월을 기준**으로 할 경우, **신규 채용을 하였더라도 증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발생**

⇒ (검토) **증가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근로시간을 단축한** 날이 속한 달의 직전 **4~6개월 전까지의 또는 직전 3개월간 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**

▲ (건의) **최저임금 110% 이상 근로자 채용 요건이 부담**

⇒ (검토) **최저임금 100% 이상 근로자 채용시 지원**

▲ (건의)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 **근로시간 단축 준비**를 위해 **미리 채용한 인원**에 대해서도 **지원 요청**

⇒ (검토) **'18. 3.1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 및 증가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**

3 지원요건

①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**취업규칙·단체협약** 등을 제·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

* 제도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

- **조기단축기업은**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**노동조합 대표자**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**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**

②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**단축**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**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**로 유지되어야 함

③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(조기단축)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(조기단축)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**4~6개월 전까지의 또는 직전 3개월간***의 **월평균 피보험자수보다** 1명 이상 **증가**하여야 함

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선택 가능(다만,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
④ 주 근로시간 단축제 **도입 전 근로시간 관리**는 **수기 관리 방식**도 인정가능하나, 주 근로시간 단축제 **도입 후**에는 **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**만을 인정

* 1회차 지원금 단위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수기에 의한 방식을 인정

* 업종 및 직종의 특성상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가 곤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기에 의한 기록 인정

⑤ *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**하여 **최저임금액 이상***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

*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에 따라 최저임금액 기준 요건(110→100%) 완화

④ 지원내용

상시근로자 수		법정근로시간 단축	52시간 조기단축
	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, 최대기간	
500인 초과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, 1년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/이후 40만원, 2년
	임금보전	40만원, 1년	40만원, 2년
300인~500인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, 1년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/이후 40만원, 2년
	임금보전	40만원, 2년	40만원, 2년
300인 미만	증가근로자 인건비	80만원, 1년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/이후 80만원, 3년
	임금보전	40만원, 2년	40만원, 3년

○ 500인 초과 기업 임금보전

: 임금보전 지원 실시(월 최대 40만원, 1년)

○ 임금보전 지원 범위 확대

: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임금보전 실시

* 임금보전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보전금액의 80% 한도로 지원

○ 조기단축 기업 지원 기간
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**2년간 지원**

* 49인 이하 기업은 법정시행일이 '21.7.1.이므로 '18.7.1.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는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**60만원/100만원**을 지원하고, 시행일 이후는 **40/80만원** 지원

○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시간단축도 지원

- **법정근로시간 내의 단축***도 **개선안**에 따라 **지원**하고, 근로시간 단축 규모와 상관없이 **단축이 있으면 지원**

* 기존 66시간에서 63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

⑤ 지원제외 근로자

○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가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
나.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
다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1호에 따라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1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○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**최저임금 100% 미만의 임금**을 지급받은 근로자. 다만, 해당 근로자가 「최저임금법」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

○ 비상근촉탁근로자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
○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
○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. 다만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

○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○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○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
⑥ 지원제외 사업주

○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

○ 부동산업,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○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○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
○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
가.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
나.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
다.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
라.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7 제출 서류

지원내용	제출서류
조기단축기업 지원	► 근로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신규채용 인건비 지원	► 사업신청서(별지 서식 몇 호) ►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노·사간 협약서(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) ►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) ►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자명부, 임금대장 등) ►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 ►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수 산정 서식 ► 신규 채용한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
임금감소분 지원	►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금액 산정 서식 ► 지원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8 지급주기 및 신청시기

○ 지원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

○ 제도도입일이 속한 달의 **다음달부터 3개월 후 신청**

<예 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7.1일인 경우

- 증가 근로자수 = [(8월 말+ 9월 말+ 10월 말 피보험자 수)/3]
  - [(1월 말+2월 말+ 3월 말 피보험자 수)/3]
- 제도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 후인 11월에 1회차 지원금 신청

9 지원절차: 신청방식

사업계획수립 (고용부) →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(사업주) →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(사업주) → 지원금 지급 (고용센터) → 지도·점검 (고용센터)